

담양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담양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 6. 11.

담양군의회의장



1. 조례명 : 담양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o 담양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마을·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조례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5. 6. 10. ~ 6. 15.(5일간)

5.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
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 전화 : 061-380-3507~8(FAX 061-380-3590)

라. 의견제출 방법 : 전화, FAX, 직접방문, 우편

6. 조례안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서식

의견서		
1. 조례안	담양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견	관련조문	의견
3. 기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년 6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		

담양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담양군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사회적·심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교육·경제·문화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교육생태계”란 지역사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교육의 주체들이 서로 연결된 지역의 관계망 속에서 상호작용으로 배움이 일어나고, 삶과 연결된 배움을 통해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진화하는 유기적이고 선순환적인 체제를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교육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활동을 말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동·청소년을 함께 키우고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생, 학부모, 학교, 담양군, 담양교육지원청, 지역 주민 등이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 교육력 제고 및 마을의 교육역량 강화를 지향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5.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마을교육공동체 간 조화로운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담양교육지원청 및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활동 지원
2.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기관 지원
3. 마을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지원
4.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지원
5. 마을교육공동체 지도자 등 전문 인력 양성 지원
6.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성과평가 등) 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에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경우 필요하면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을 평가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 학교,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담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